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 - 467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제정이유

345kV 이상 국가기간 전력망의 적기 확충을 위하여 국가 주도의 새로운 거버넌스 신설, 초장기 전력망 기본계획 수립, 인허가 의제 확대 등 인허가 신속처리, 주민 및 지자체에 대한 보상·지원 강화 등을 내용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844호, 2025. 3. 25. 공포, 2025. 9. 26. 시행)됨에 따라, 각종 서식, 공청회 진행방법, 토지 보상 가산지급 기간, 분할 지급의 기준, 정보공개 대상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시계획의 승인·변경 승인 신청서 등 서식

나. 공청회의 개최 요구 요건 및 진행 방법 등

다. 토지 보상 가산지급 기간, 분할지급의 기준 등

라. 정보공개의 대상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9. 8.(월)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마.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유용상 사무관 앞
- 전화 : 044-203-3931
- 팩스 : 044-203-4756
- 이메일 : yys7856@korea.kr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호

시행규칙 제 호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제2조(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신청 등)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제3조(토지등의 명세서식 등) 영 제16조제3호에 따른 매수나 보상계획 등의 서류 중 토지등의 명세와 토지등의 세목 중 토지부분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토지 외의 물건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11조제3항 단서

에 따라 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신고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 4호서식의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서에 변경이유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1. 필요한 자금과 그 조달에 관한 사항의 변경
2. 공공시설의 설치와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의 변경
3.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인·허가등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송전선로의 길이, 변전소의 용량·형태 및 그 부대시설 등의 변경

제5조(주민등의 의견서 등 비치)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이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등의 의견서에 따른다.

제6조(공청회의 개최요구 등) 영 제23조제4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등”이란 19세 이상인 주민등 30명 이상을 말한다.

제7조(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의 제출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 선정 등) ① 공청회의 주재자는 해당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업시행자가 정한다.

② 주민등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사람(이하 “의견진술자”라 한다)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자가 추천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의견진술자를 정하고, 그 결과를 추천한 주민등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를 정할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공청회의 진행) ①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견진술 시간 등을 미리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의견진술자는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에 한정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③ 공청회 주재자는 의견진술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의견진술자 간에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장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입지선정에 관한 특례 등

제10조(신속처리신청서 등) ①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속처리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신속처리 결과통보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11조(규제개선 요청서)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규제개선 요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4장 지원·보상에 관한 특례

제12조(토지등의 사용 및 보상 등) ①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최초 보상 안내문을 발송한 날부터 3개월을 말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해외체류 등으로 인해 보상 안내문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등 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하 “조기협의장려금”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분할지급의 방법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및 분할지급 방법” 등의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토지매수청구서)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토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15조(재정적 지원 신청서) 영 제3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제5장 보칙 등

제16조(정보공개)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1. 영 제15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출입에 관한 사항
2. 영 제21조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청취의 방법, 시기 및 내용
3. 영 제23조에 따른 설명회의 주요 내용 및 결과
4. 영 제24조에 따른 공청회의 주요내용 및 결과
5.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공고·공람 내용
6.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진행 상황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는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종합정보시스템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

조기협의장려금의 산정방법(시행규칙 제12조제2항 관련)

1. 조기협의장려금(이하 “장려금”라 함) 산정방법

$$\text{장려금 산정방식} = \text{보상액} \times \text{계약 체결기간에 따른 지급률}$$

가. 보상액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산정한 감정평가금액을 말한다.

나. 지급률은 최초 보상 안내문을 발송한 날(이하 “협의시작일”이라 한다.)부터 3개월 이내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을 위한 계약이 완료된 경우 그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1) 협의시작일부터 2개월 이내 : 75%
- 2) 협의시작일부터 2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50%

다. 나항에 불구하고, 보상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률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1) 협의시작일부터 2개월 이내 : 45%
- 2) 협의시작일부터 2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0%

라.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1) 해당 토지등이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국·공유재산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인 소유한 토지

※ 장려금 산정예시 : 보상액이 1.5억원이고 협의시작일부터 2개월 이내 계약이 체결된 경우

$$\text{장려금} : 1\text{억원} \times 0.75 + 0.5\text{억원} \times 0.45 = 0.975\text{억원}$$

2. 장려금 지급 시기

가. 장려금은 토지등의 사용을 위한 매매 또는 (구분) 지상권 계약 체결 및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당해 토지등의 보상금 지급 시 합산하여 지급한다.

나. 사업시행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토지등의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보상금 등에 대하여 일시 또는 분할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실시계획 [] 승인 [] 변경승인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사업시행자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사업의 명칭						
사업의 목적·개요 또는 사업 변경의 사유·개요						
사업시행의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개월)					
사업구역의 위치		사업구역의 면적				
필요한 자금 및 자원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	시설명	공사기간	시설규모	예산	비용부담	
					사업자	
					행정관청	
국토자연환경 보존에 관한 사항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11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 승인 []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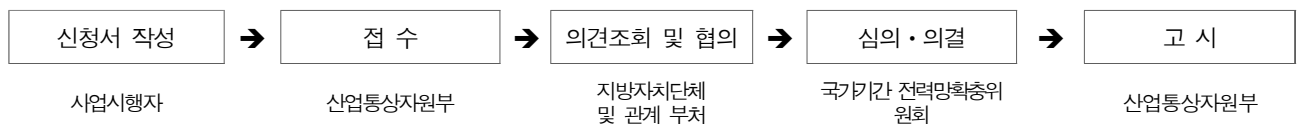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영 제16조에 따른 각 호의 서류 1부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서류 1부 3.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서류 1부(보상이나 매수 계획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영 제17조 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서류 1부 5.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illegible]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illegible]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사업시행자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업체명
사업의 명칭		
구분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시행 기간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위치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사양		
사업구역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13조제1항제8호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사항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11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변경이유서 1부	수수료
		없 음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서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 사업명		
사업구역의 위치		
사업시행자		
의견제출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의 실시계획안에 관한 의견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의 내용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전력공사 사장 귀하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사업명			
사업장 위치			
사업시행자			
공청회 주재자			
개최일시			
개최장소			
참석인원			
의견진술 요지 및 사업시행자 의견 (의견진술자가 많은 경우 별지로 첨부)	의견진술자	성명	전 화 번 호
		주 소	
	진술 요지		
	사업시행자 의견		
	의견진술자	성명	전 화 번 호
		주 소	
	진술 요지		
	사업자 의견		
	의견진술자	성명	전 화 번 호
		주 소	
	진술 요지		
	사업시행자 의견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알립니다.

년 월 일

사업시행자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장·군수¹⁷·구청장 귀하

의견진술자 추천서

사업명		
사업장 위치		
사업자		
의견진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진술하려는 전원개발 사업 실시계획 등 의 견의 개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실시
계획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사람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18 추천자 (서명 또는 인)

부대공사인허가 등의 신속처리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사업시행자	기관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E-Mail(전자우편)
신속처리의 신청대상	대상 사업		
	신청처리 관련 법령		
	신속처리의 필요성		
	인가·허가 등의 신청 일 및 신속처리 희망 기한		

「국가가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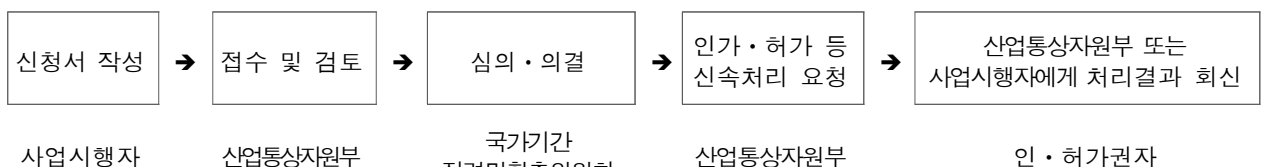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부대공사인허가등 신청 당시 해당 부대공사 인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자료 2. 부대공사인허가등 신청 이후 해당 부대공사인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회신 받은 자료 3.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처리 지연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처리가 필요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부대공사인허가 등 신속처리 결과통보서

신청인		
신청일		
신청사항		
인가·허가 등 관할 행정기관의 신속처리 의견	관할 행정기관명	
	신속처리 요청사항	
	신속처리 결과	
	신속처리 요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17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해당 인가·허가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

직인

규제개선 요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사업시행자	기관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신청기업 개요	※ 규제개선 관련 사업에 관하여 기술하십시오.	
개선대상 규제	규제내용(관련 법령)	
	규제 문제점	
	규제개선 방안	
	그 밖의 참고사항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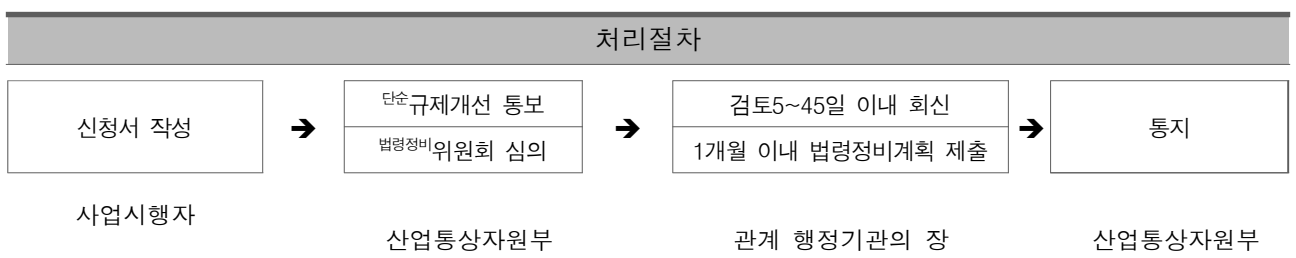
년 월 일

사업시행자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보상금 분할지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대상토지	토지소재지		
	편입면적(㎡)		
	토지가격(감정평가금액)	조기협의장려금	비고(장려금 지급률)
	총 지급액 (이자율 및 지가변동을 제외)		
일시금	()%, 10% 단위로 작성		
분할신청기간	() 년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조기협의장려금 분할 지급을 신청합니다.

$$\frac{1}{\sqrt{2}} \begin{bmatrix} 1 & 0 \\ 0 & 1 \end{bmatrix} \quad \frac{1}{\sqrt{2}} \begin{bmatrix} 1 & 0 \\ 0 & -1 \end{bmatrix} \quad \frac{1}{\sqrt{2}} \begin{bmatrix} 1 & i \\ 0 & 0 \end{bmatrix}$$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업시행자

귀하

토지(선하지) 매수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대상토지	토지소재지		
	편입면적(㎡)		
	토지가격(감정평가금액)		
분할지급 신청	신청(), 미신청()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조기협의장려금 분할 지급을 신청합니다.

이제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업시행자

귀하

재정적 지원 신청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지상 공간에 설치되는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적 지원을 신청합니다.

1. 청구기간: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건설사업" 승인등완료일(20 . . .)부터 이 사업의 공사 완료일(예정일: 20 . . .) 후 2년까지(공사완료일은 준공 후 다시 알려 드립니다)

2. 세부사항

재정적지원	국가기간 전력망 경과지자체
	재정적 지원 규모
	지원사업
	지급방식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업시행자

귀하

재정적 지원 신청자 (인)

첨부서류	지원사업의 계획서 1부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